

『서울특별시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』에 대한 제안설명

□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!

그리고 선배·동료 의원님 여러분!

더불어민주당 박강산 의원입니다.

『서울특별시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』의
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
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□ 지금부터

『서울특별시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』에 대하여
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□ 먼저 조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

만성질환으로 인해 지속적인 의료 지원이 필요하여
학교 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
건강장애학생의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했습니다.

□ 이에 원격수업, 순회교육, 병원학교와 같이

건강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정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
학습권을 보장하고 학교 복귀 지원을 도모하고자 했습니다.

- 다음으로 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.
안 제3와 제4조에는 건강장애학생의 교육지원에 대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했고,
안 제6조에는 건강장애학생의 학교 복귀를 지원하는 병원학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.
안 제7조와 제8조에는 학습권 보장을 위한 원격수업과 순회교육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.

-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!
본 의원은 조례 제정 과정에서 입법예고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.

-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
본 의원의 조례 제정 취지를 이해하셔서
교육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,
이상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